위촉진행시 제출서류

지점명: 성명:

접수날짜 : 2020.

필 수 서 류

- 1. (첨부양식) 등록,위촉 요청서 (지점장작성!!!)=>지점명,위촉자,직급,소속팀장,유치자작성
- 2. (첨부양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영업윤리 준수서약서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금융사고 여부 확인서(지점장, 위촉자 작성!!!)
- 3. (첨부양식) 업무위촉계약서 (지점장, 위촉자작성, 위촉자간인, 유치자란 작성) (인사기록카드 반명함판 사진부착, 꼼꼼히작성필요!!!) **** 간인은 위촉자 도장, 지장만 가능****미제출시 위촉불가!!!
- 4.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3개월이내)
- 5.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따로따로 복사해서 주세요)
- 6.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격증(신규일 경우)
- 7. 보험연수원 등록교육 수료증(신규,경력) (단, 전속에서 신규교육을 들으신분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에서 교육내용 캡쳐본 제출)
- 8. 경력증명서(경력일 경우) (전회사 퇴사후 신청해서 받아 제출- 금융사고유무 체크되어 있어야함) (1번이라도 다른회사에 등록한적이 있으면 제출필요함)
- 9. 변액합격증
- 10. 증명사진 (인사기록카드에 붙여서 주세요)

11.

- *** 위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서명으로 작성=> 위촉자 이름,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mark>,신주소</mark>만 작성 (도장사용 불가->도장은 업무위촉계약서 간인시에만 사용가능)
- 지점명,지점장,관리자,날짜 작성불가!!!
- 틀리면 삭선후 수정서명(수정테이트사용금지)
- 칼라펜, 연필 사용금지 *무조건 검은색 펜 사용 바랍니다
- *** 변액위촉서류 꼼꼼하게 작성필요!!(흐린글씨는 베껴쓰기 / 답안지보고 옮겨적기 등등)
- ** 라이나생명과 교보생명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생명보험협회 등록후 신청요망



)월 등록.위촉 요청서

*** 위촉대상자 ***

		נ					
		대					
	DI	사용인 / 유자격자					
	: 및 자격여부	令 只					
	미육수료	생보					
	협회말소	수					
	砌	休음					
	력/신인)	손보					
	경력구분(경력/신인)	생보					
		유치자					
		소속팀장					
	위촉자 직급 (FP,SM,BM)						
		위촉자					
30 5		지점명					
			-	2	3	4	2

접수일: 2021 년 월 일

(대구)지점 : 지점장 심봉갑 (인)



인사기록카드

사업!	루	서울	사업부	지점					위촉일	202	년	월	일
		한 ·	글		주	민등록번호			-				
인	성명	한 :	자		전	화 번호		-	-				
적		영 .	문		한	보 드 폰		-	-		11.7	۲۱/۵ ۸	`
사	주	소									^[1	진(3×4)
항	실 제	생 일		(음	· 양)	결혼여부		기혼	• 미혼				
	e-ı	mail				결혼기념일	길						
유치	<mark>I자</mark>	소속				성명							
학	,	기	간		학교	고 명		졸업유무(Y/N)	전	공		소 자	네 지
력	/	/ ~	/ /		고등	학교							
사	/ / ~ /		/ /		대호	학교							
항	/ / ~ / /		/ /		대호	학원							
가	관 계		성 명	Ą	뱅 년	월 일		직 업	학략	취구분		동거	여부
족 사													
항													
		근	구기간		회시	· 명		직위	주요업5	무내용		연 4	노득
보험	/	/ .	~ / /										백만
경력 사항	/	/ .	~ / /										백만
, 0	/	/ ·	~ / /										백만
	주택정	형태	1) 아파트	2) 빌라	3)) 단독주택	4)	기타(<u> </u>)	
주거 현황	거주	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	4)	가족동거					
17.0	차량!	보유	차종(), 大	·량번	호(), 소	유자명()	
	병	역	1) 장교	2) 하사관	3)	현역	4) [단기사병	5) 공익	근무	6)	면제	
기타	보유지	·격증	보험설계사(생명, 손해),	변액된	판매관리사, 경	간접.	투자판매균					
사항		10	AFPK, CFP,	IFP, 기타()			*보유지	∤격증에	체크	l해주/	네요
	교육(기수											
수수	료 지급계	<mark> 좌</mark>	예금주(본인)	:	2	2행명 :		계좌번	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처리기 5 약				
① / (/	사업장 사업기	·관리 내시 년	번호 번호)			2	14-88	3 6 4	25	0		
	② 상 (지	호 · 법 점	인명칭 명)		(주)	엠금융 <i>/</i>	시비스		(지	점 명 :)
사업장	③소	재	지	061			· 테헤란로 ·동, 상경발	•		(전화:	02-6925-	-1730)
	④ 대	丑	자				손상	수				
근	⑤ <mark>성</mark>		명					⑥ <mark>주민등</mark>	록번호		_	
로 종	⑦ 주	소	지					<mark>(전화</mark> :		핸드	프:)
사	⑧ 일	직	일	20	년	월	일					
자 (1)	⑨ 업	무ᅧ	형 태	☑보험	설계사 []콘크리	트믹서트럭	운전자 🗀	학습지고	2사 □골:	프장 캐디	
근	성		명					주민등록	루번호			
로 종	주	소	지					(전화	-:	핸드픈	≛:)
사	입	직	일		년	월	일					
자 (2)	업	무 형	태	☑보험	설계사 []콘크리 <u></u>	트믹서트럭	운전자 🔲	학습지고	2사 □골:	프장 캐디	
	٢٤	<u> </u> 업자	해보^	상보험 ^肓	법」 제1	25조제3	3항에 따리	ナ 위와 같	이 신.	고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주)	(주	두)엠금융서	네비스	((서명 또는	는 날인)	
				□보험	사무대행	기관			((서명 또는	는 날인)	
			Į	고로 근로	복지공단	<u>}</u>	지사 지	역본부(지	사)장	귀하		
*	구비			74 O -11	೧ <i>ೱ</i> Տ ∧Ո ⊸	l <mark>소</mark> →l →	nahalala	1 =1, 1 -1			수수	
	됩식·	<u> </u>	당 <u>는</u> 	クナ 세	2쪽에 A	子 기ス	배하시기 ㅂ 	r합니나. 			없 	유

*	접수일자	 •	*	선 람	*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 접	접수번호		처		^^ 결						
수	처리기한	 •	리	입력필	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6.2.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214-88-36425-0	대표자 성명 손 상 수		
신고 사업장	명칭 (주)엠금융서비스	전화번호 02-6925-1730		
	소재지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0, 12층	층(역삼동,상경빌딩)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형태 고르조시지	<mark>주소</mark>			
근로종사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 신청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고, 해당 문장을 자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 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다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청인

영업윤리 준수 서약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지 점 : 서울사업부 지점

상기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FP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된 제반규정,법규 및 윤리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고 모범적인 엠금융서비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영업활동에 있어 엠금융서비스의 품의를 지키고 영업윤리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3.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를 습득한 경우 누설하지 않는다.
- 4. 고객의 재정설계를 담당하는 재무설계사로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며 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

년 월 일

서약자**(**이름) (인)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무자격자 모집 위탁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회사는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귀중

귀하는 아래의 모집경력 수집·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모집경력	수진.(미용미	과하	동이
	THO	THV			\sim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모집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mark>동의함</mark> □ 동의안함)

- □ 모집경력 수집·이용 목적
 - ㅇ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여부 판단, 모집경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3자 제공
- □ 수집·이용하는 모집정보
 -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 3년 및 장래 발생할 ①부터 ⑩ 까지의 모집경력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의1(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에 따른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청약철회건수, 불완전판매율 ⑥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의 산출기준에 따른 13회차/25회차 계약유지율 및 계약유지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⑦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제9호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 여부, ⑧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에따른 집합·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⑨ 보험업법에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수당환수 내역, ⑩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 모집경력의 보유·이용기간
 - ㅇ 미위촉자 : 위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 ㅇ 위 촉 자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후 3년까지

2. 모집경력 조회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등을 통해 본인의 모집경력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동의합 □ 동의안함)

- □ 조회할 모집경력의 내용
 -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 3년 및 장래 발생할 ①부터 ⑩까지 의 모집경력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의1(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에 따른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청약철회건수, 불완전판매율 ⑥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의 산출기준에 따른 13회차 /25회차 계약유지율 및 계약유지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⑦ 보험업감독규정 제 9-4조의2 제9호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 여부, ⑧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에따른 집합·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⑨ 보험업법에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수당환수 내역, ⑩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 모집경력 조회목적 :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여부 판단 및 모집경력의 체 계적 관리
- □ 조회자의 모집경력의 조회·보유·이용기간
 - ㅇ 미위촉자 : 위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 ㅇ 위 촉 자 : 조회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후 3년까지

3. 모집	l경력	제공에	관한	동의
-------	-----	-----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모집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 :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보험연수원, 보험소비자
 -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의 상호 <u>및 제공하는 모집경력은</u>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u>손해보험협회</u> (www.kni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호는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 본 동의는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보험연수원,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모두 포함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 위촉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경력의 수집 · 관리 · 제공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u>보험대리점</u>,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 위촉계약 체결 여부 판단 및 모집경력의 체계적 관리,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제공
- <u>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5조에 따른 보험계약청약서 상 모집</u> 중사자의 불완전판매율 산출 및 기재
- <u>보험연수원 : 집합·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이수여부 정보</u> 관리·제공
- ㅇ 보험소비자 :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대리점에 대한 경력정보 조회 및 확인

□ 제공할 모집경력

○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일로부터 과거 3년 및 장래 발생할 ①부터 ⑩까지의 모집경력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의1(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항목별 산출기준)에 따른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청약철회건수, 불완전판매율 ⑥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6호의 산출기준에 따른 13회차/25회차 계약유지율 및 계약유지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⑦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 제9호에 따른 우수보험설계사 해당 여부, ⑧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집합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⑨ 보험업법에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수당환수 내역, ⑩ 보증보험 기입 및 청구 유무

□ 제공받는자의 모집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ㅇ 제공 동의일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말소후 3년까지

20 년 월 일

회사명 또는 대리점명	㈜엠금융서비스
대리점 등록번호	2009028021
생 년 월 일	
보험업계 고유번호	
휴대전화번호	
<u>주</u> 소	
전자우편주소	
성명	(서명)

* 상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금융사고 여부 확인서

금융사고 회사명	융사고 경력이 있는 경 	금융사고 유형					
제재 일자		제재 내용					
[금융사고 관련내용	<u>.</u> 기술]	•					
 즈\ 그은사고 겨려이	라 드로치스 ㅈ뉘기 이	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	거이 아니라 ㅂ헝샤				
.,		표한 성구글 의미야근 (
등에서 자제규정 등에 따라 금융사고자로 제재절차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로 제재절차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등에서 사세규정 건으로 보고한 :		·로 제재절차를 완료한 ·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건으로 보고한		·로 제재절차를 완료한 ·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건으로 보고한 ⁻ 금 융사고 심의 진행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건으로 보고한 - 금융사고 심의 진행이 ■ 직전회사에서 금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랭유무 : 있다 □ <mark>없</mark>					
건으로 보고한 금융사고 심의 진행이 ■ 직전회사에서 금 ■ 직전회사에서 금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융사고로 현재 심의진형	랭유무 : 있다 □ <mark>없</mark>					
건으로 보고한 - 금융사고 심의 진행© ■ 직전회사에서 금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융사고로 현재 심의진형	냉 유무 : 있다 □ <mark>없</mark> 진행중인 경우 작성					
건으로 보고한 금융사고 심의 진행이 ■ 직전회사에서 금 ■ 직전회사에서 금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융사고로 현재 심의진형	생 유무 : 있다 □ <mark>없</mark> 진행중인 경우 작성 심의중인					
건으로 보고한 경 금융사고 심의 진행이 ■ 직전회사에서 금 ■ 직전회사에서 금 심의진행 회사명	경우를 말함 여부(해당란에 V 체크) 융사고로 현재 심의진형 융사고로 현재 심의가	생 유무 : 있다 □ <mark>없</mark> 진행중인 경우 작성 심의중인					

202 년 월 일

지점명 : 대구지점

작성자 : (서명) 지점장 : 실 불가 (서명)

㈜엠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귀중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관용 위촉코드 :

위촉 계약서

수	소 .	서욱사언부	지전

직책/성명 : ______/

제출 일자 : 20 . . .

"평생의 금융파트너"





목 차

I.	보험설계사 위족신청서		3
п.	인사기록카드(반명함판 사진부착)		4
ш.	위촉계약서		5
IV.	제 서약서, 동의서, 약정서 및 확인서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12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12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13
4.	윤리준법 서약		14
5.	비밀유지 서약		14
6.	개인(신용)정보 보안 서약		16
7.	업무관련 서약		16
8.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혼	·····	17
9.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18
10).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19
11	I.보증보험 가입동의		21
12	2.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부속약정		21
13	3.금융사고 여부 확인		22
14	1.위촉계약서 교부.수령 확인		22

첨부

- 1.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 규정
- 2. 위촉계약서 교부.수령 확인증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회 사 명	㈜엠금융서비스	유 치 자
소 속	서울사업부 지점	소 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mark>성 명</mark>
현 주 소		사 번
휴 대 폰	자택전화	휴대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위촉을 신청합니다.

- **인사기록카드** (회사양식, 사진부착)
- **가족관계 증명원**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사본 (하단 부착)
- 통장 사본
- **직전회사의 경력증명서** (경력설계사에 한함, 상벌사항 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수수료 지급관련 채권서류 일체
 - → 이행보증보험증권,예금(보험)질권,근저당 설정,수수료 적립 또는 분급,약속어음 공증(앞의 4가지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본 개인정보는 ㈜엠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등록 및 위촉업무에만 사용됩니다.

신분증 사본 부착

(인사업무 담당자는 첨부 서류들을 반드시 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 바랍니다)



㈜엠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

㈜엠금융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는 ______을(를) 당사의 보험업법 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라 한다) 신분인 Financial Partner(이하 'FP'라 한다), Telemarketer(이하'TMR'이라 한다), Sales Manager(이하 'SM','팀장'이라 한다), Branch Manager(이하 'BM','지점장'이라 한다), 지역단장, 본부장으로 위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의 수납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및 기타 회사로 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의 편입)

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인사관리규정', '수수료 규정','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규정'등을 포함한 영업관계 제 규정을 적용 받으며, 영업관계 제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3 조 (책임과 신의성실 원칙)

회사와 설계사간의 계약은 상호호혜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모집계약 및 계약 관련한 모든 금전적 문제,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한 1차 책임은 담당 설계사에게 있다.

제 4 조 (설계사의 신분)

- 1. 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및 보험설계사 등록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유관 기관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 2. 설계사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규정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및 위촉서류)

- 1. 본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 2.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 3. 회사의 설계사로 위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서, 서약서, 동의서, 약정서 및 확인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와 필요에 따라 회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탁업무)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 2.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 3.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 4.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명시, 설명과 이에 대해 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 받은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징구
- 5. 상기 각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 6.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 7. 기타 회사가 설계사 관련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업무



제 7 조 (계약 내용의 변경)

- 1. 회사는 경영상의 판단 등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 등을 변경,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2. 회사는 본 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설계사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다만,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공되는 법률, 규정, 협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이발생, 법규위반 소지의 해소, 단서조항 등 경미한 사항, 모집성과와 관련 없는 지원제도, 기타 부당경쟁 및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경우와 해당 설계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변경내용을 사내전산망 또는 지점 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 3. 회사는 위촉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설명하고, 사내 전산망 또는 점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보험모집 수수료)

- 1. 설계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위촉 약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계사에게 설명. 안내한 수수료 관련 영업관계 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회사는 설계사에게 전월 모집실적에 대하여 매월 <u>27</u>일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u>전영업일</u> 지급한다. 단, 회사의 일정상 수수료 지급일자는 변경 될 수 있다.
- 3. 회사는 설계사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 및 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 4. 다수의 설계사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그 역할에 따라 수수료를 분배(쉐어링) 할 수 있다.
- 5.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반 수수료를 포함하고 각종 시책비 및 지원금 등 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금전 및 물적의 경제적 대가를 말한다.
- 6. 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차 미유지 등에 의하여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기준에 의거 사유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계산착오나 정산오류, 지급률 착오 적용, 기타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회사에 즉시 반환 하여야 하며 설계사 해촉 이후에도 동일하고 유효하게 적용한다.
 - 7. 회사는 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2개월 연속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액의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설계사는 즉시 환수액의 잔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수수료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설계사에게 시행 예정일로부터 30일전(단, 보험사의 제도 변경에 의해 연동해서 회사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가 통지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미리 변경 내용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사내 전산망 공지)으로 공지하고, 이 경우 설계사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변경 예정내용에 대해 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설계사가 수수료 지급규정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9. 회사가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설계사는 장래에 발생 할 수 있는 환수수수료에 대한 이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0. 수수료는 수수료 지급일에 위촉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점 폐쇄 또는 설계사 해촉시 잔여수수료는 부 지급한다. 단, 기타 특이한 사항은 영업관계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 위촉중인 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질서 위반 또는 불완전판매, 보험 제 법규위반, 위촉약정서 및 제 지침에서 정한 규정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 또는 보험 적부심사, 수수료 정산 등 회사의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 되는 기간 동안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12. 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완전판매지침을 위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제재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수료에서 해당 손실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 9 조 (수수료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1. FP, TMR, SM, BM, 지역단장, 본부장은 수수료 지급일 5일전까지 아래의 기준의 보증보험증권(또는 담보)를 회사에 제공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또는 담보)이 미 제출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2. 직급별 보증보험 최초 가입금액 (각각 계약기간 2년 및 1년 경과시 마다 갱신)

가. FP, TMR: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나. SM: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다. BM: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라. 지역단장 및 본부장 :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지급 수수료가 보증보험 가입금액(또는 담보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일 5일전까지 증액된 보증보험증권(또는 담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된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0 조 (보험모집 위탁교육)

- 1. 회사는 상품판매교육 및 불완전 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2. 회사는 필요시 설계사에게 교육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규 모집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3.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 2,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라 설계사로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 6개월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탁업무의 일시중지)

- 1. 설계사는 출산,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3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사가 위탁업무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2. 회사는 상기의 사유로 위탁업무가 일부 중지된 경우에도 중지되지 않은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2.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3.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사가 요청한 위촉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 7. 부당하게 설계사가 될 자의 소개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 하게 처분하는 행위 다만, 설계사의 영입업무를 위탁 받아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8. 설계사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여 보험모집 실적을 강요하는 행위
- 9. 보험계약 체결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료의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 10.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 11. 지점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사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지점을 변경하는 행위

제 13 조 (자기계약 제한)

- 1. 설계사는 본인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자기계약'이라 한다)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1항에서 과도한 '자기계약'이란 매월 말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신규로 모집한 자기계약 보험료 누계가 동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전체 모집계약 누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 자기계약이라 함은 계약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본인 및 주민등록법상 등재된 가족인 경우를 말한다.
- 3. 회사는 설계사의 과도한 자기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4 조 (설계사 준수사항)

설계사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회사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회사의 관련 지침 및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 2. 설계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가 작성하거나 회사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보험안내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한 보험안내자료 및 대출 안내자료를 제작·배포 또 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보험 모집시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 알린 사실, 이와 관련되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및 상황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 4. 위탁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사로서의 신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업지점(지사)내에서 위탁업무 이외의 어떠한 업무도 수행 할 수 없다.
- 5. 위탁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수수료 통장 포함), 보험안내자료 등 문서도화, 영수증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 또는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6. 보험료를 수령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령한 보험료는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7. 고객의 개인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를 당사자(회사 포함)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 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 관련 자료 등의 제반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유인하는 등 부당하게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설계사는 회사의 윤리강령 및 영업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설계사로 등록 중에 동업타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11. 회사에 위촉 중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완전판매가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2. 회사의 감사, 준법감시, 소비자보호, 민원 관련부서 및 이와 관련한 외부기관의 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13. 설계사는 영업활동을 위해 본인이 자체 구입 또는 제작한 자료에 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고서 는 회사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 14. 설계사는 개인 신상 변동사항(가족관계 등록사항,성명,주소,신분 등) 발생시 변동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15. 보험계약 관련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16.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
 - 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수령하려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17. 본 계약서 내용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사의 요구 또는 조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15 조 (보험모집질서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

1.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99조 (수수료 지급등의 금지)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등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규정'에서 정의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설계사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①항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 3. 설계사는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 및 「손해보험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설계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유출, 오용,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16 조 (위촉계약유지 최저 기준)

- 1. 회사는 설계사가 회사와 위촉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 2.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은 신규 모집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실적 등에 대하여 회사가 설정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 3.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적용 1개월 전에 통지하고 설계사가 부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위촉계약의 해지)

- 1. 설계사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요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기간 중이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보헙업법 상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보험업법 위반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다. 위촉계약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또는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 마.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장해 등으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바.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수행과 관련된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사.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회사가 정한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아. 설계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촉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 설계사가 사망한 경우
- 차. 회사의 점포 통.폐합, 사업변경, 영업정책의 변경 등으로 회사가 해촉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카. 설계사가 보험사기행위로 적발된 경우
- 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고객정보 활용 또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민원,고발 등 민.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3. 계약해지의 경우 설계사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서류, 즉 제공받은 DB, 계약자 정보, 메모, 판매자료, 기타 문서화 및 전산화되어 있는 모든 정보 및 금전 등을 해지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반납하며, 이메일 자료도 삭제한다.
- 4. 회사가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설계사가 위촉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에 위촉계약 해지 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설계사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사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 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8 조 (손해배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본인 고지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 회사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 관련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5.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출. 오용. 남용하여 회사에 민.형사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6. 기타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19 조 (구상책임)

설계사는 업무수행 및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고객을 포함하여 제 3자(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생보협회, 손보협회기타 사법기관)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하여 책임을 지며,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또한 모집한 계약 및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제 3자(보험회사, 금융감독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기타 사법기관)로 부터구상청구 발생시 해당 설계사가 구상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설계사의 제재 및 상계)

- 1. 설계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 규정'에 따라 '주의', '경고', '영업정지', '수수료 삭감',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설계사가 본 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채무를 지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설계사가 본 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설계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4. 설계사는 모집한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선지급수당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보수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언제라도 설계사에게 지급될 수수료에서 설계사가 회사에 지급할 부채 및 채무 등을 상계할 수 있다. 회사가 받아야 할 설계사의 부채 또는 채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상계 행위는 설계사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회사에 대한 여하한 청구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제 21 조 (계약의 준수)

설계사가 본 계약서의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즉각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때로는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설계사가 본 계약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도 좋다고 동의하거나 허락한 것으로 해석 되어 질 수 없다.

제 22 조 (조세관련 책임)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해당설계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제 23 조 (신용정보의 제공)

설계사는 회사가 본 계약기간 중 수시로 설계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위촉계약 체결시 모집경력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자료를 생.손보 협회에 제공하는데 동의 한다.

제 24 조 (비밀유지)

설계사는 본 계약기간 중 알게 된 회사의 정책,업무,직원,상품,수수료,고객정보 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본 계약의 기간 종료.해지 후에도 비밀유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제 2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서는 한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해석.규율 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계약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촉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전의 계약 및 관계하에서의 재정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본 위촉계약서와 지점(지사)계약서가 상호 중복될 경우에는 지점(지사)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회사가 합병이나 통합으로 상호변경(사업자 변경)시에도 상법을 준용하여 본 계약서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7 조 (사실확인)

본 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설계사는 본 계약서 및 영업관계 제 규정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계약서 및 영업관계 제 규정 의 변경, 신설 또는 폐지의 미 통보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회 사>

법 인 명:㈜엠금융서비스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110111-4022680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0, 12층(역삼동 상경빌딩)

<설 계 사>

<mark>성 명</mark>: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지 점 장>

성 명: 실 보 간 ((X)서명)
주민등록번호: 610815-1696424
주 소: 73산시 작용읍 대학로 2982 20-9
연 락 처: 이0-2501-6419

[자필 확인란]

본인	지 점 장
	خ ا

[본사 결재란]

담 당	관리자	대표이사

※ 자필 확인란 작성

-. 본인 : 위촉 신청자



서약서, 동의서, 약정서, 확인서

본인은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과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제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 가. 금융감독원의 "모집질서 확립 특별대책"에 관한 시행 취지, 주요 내용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교육을 통해 전달 받은 바
- 나.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와 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집질서 확립 특별대책"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 및 규정준수는 물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 다. 만일 위 확약 사실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제재 수단에 의한 제재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가. 완전판매의 이행

본인은 완전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 및 6대 모집질서 체크포인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으며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3대 기본지키기 내용인 ①모집/관리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배서승인청구서 등 제반 계약관련 서류에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은 후 ②청약서 부본 및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겠으며 ③약관 및 상품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2) 모집질서 6대 체크 포인트 내용인 ①특별이익 제공금지 ②보험계약 경유처리 금지 ③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④미승인 안내자료 사용금지 ⑤부당승환 금지 ⑥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 3) 본인은 계약체결 업무시 회사의 인수지침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인수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4) 본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영수한 보험료를 지연 입금하는 등 본인의 과실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 본인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체계좌, 직업, E-mail 등 고객정보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본인은 상기 사항 위반시 보험계약자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의 잘못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규정에서 정한 제재와 변상조치 이행을 서약합니다.

나. 기타 업무의 이행

본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귀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 위촉을 취소하였을 경우
-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배상 요구 및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 가) 회사의 제반 보험영업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 나)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권고 또는 경고에 불응하여 임의로 행동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다) 보험모집질서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라) 회사의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특히, 아래의 정보자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가) 회사의 전산장비는 업무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나) 회사의 정보자산 및 고객의 정보는 업무외적인 사유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전산장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다) 정보자산 및 자산의 외부 반출은 회사의 통제 절차에 따른다.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본인은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일원이며 보험업에 종사하는 설계사로서 보험업법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지침과 회사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투명한 영업문화 조성에 앞장서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가. 보험모집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나. 본인은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규정 및 기타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특히 아래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1) 경유처리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2) 무자격 모집 : 보험업법 제83조 1항에서 규정하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3) 매집 : 다른 모집조직 또는 특정인에게 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4) 승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신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5)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업법 제98조 각 호에서 정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 6) 기타 보험업법 모집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업무점검 및 검사, 민원 조사시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불응행위는 본인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라. 본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적발된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윤리준법 서약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설계사로서 보험관련 법규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영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가.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규정 및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윤리규범 준수를 생활화 하며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과 업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나. 본인은 직원 및 설계사 상호간에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성실히 대하겠습니다.
- 다. 본인은 업무상 인지한 정보나 회사정보를 위촉계약 중은 물론 위촉 계약해지 후에도 사외에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라. 본인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마. 본인은 고객들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 바. 본인은 회사의 유형재산(현금,유가증권,토지,건물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사.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모집활동을 하겠습니다.
- 아. 본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수교육 및 윤리교육, 완전판매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회사, 지점 및 개인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배상 및 처벌에 성실히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5. 비밀유지 서약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획득한 제반 정보에 업무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의 유출을 하지 않겠으며 이는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밀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비밀의 개념 및 분류

- 1) 영업비밀(회사 제 규정에서 비밀로 기재된 경우 영업비밀과 같은 개념임)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업무수행방법, 영업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써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고객관리정보
 - (1) 기초정보: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핸드폰번호, 주소 등의 개인 신상 정보
 - (2) 계약정보 : 증권번호, 계약일자,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료 등의 고객 계약 정보
 - 나) 계약관리정보
 - (1) 실적정보 : 설계사명, 소속, 수수료총계, 지급금액 등의 실적 정보
 - (2) 신계약 정보: 설계사, 보험사, 증권번호, 상품명, 보험료, 계약자 등의 계약관련 정보
 - 다) 영업관련 정보

고객제안서, 상품 설명시 이용되는 PT 자료, 각종 교육자료, 영업관계 제 규정, 수수료 규정 등

- 라) 회사의 전산 시스템, 각종 프로그램, 수익모델 등 회사에서 자체개발 하였거나 회사에서 사용중인 각종 전산 시스템, 제반 프로그램, 수익모델 및 내부 관리 시스템 등을 말한다.
- 2) 1)항의 영업비밀에는 설계사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 및지침, 양식, 연구의 성과물,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와 기타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누설될 경우 법인의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와 자료가 포함된다.

나. 비밀유지 의무 등

- 1) 설계사는 회사에 영업활동 중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모든 자료(문서, 디스켓, 컴퓨터파일 등 영업비밀이 담긴 어떤 형태의 자료도 포함)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설계사는 위촉계약 해지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담긴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퇴직을 전후하여 영업비밀이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부정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설계사는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체결하거나 체결에 관여한 모든 계약은 회사가 당사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회사의 승낙 없이 그 계약 또는 고객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회사의 영업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메일이나 컴퓨터디스켓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 4) 설계사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설계사는 영업활동 중 취득한 고객 및 계약에 관한 정보, 수수료에 관한 정보 등 영업비밀에 대하여 회사와 위촉계약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및 해촉 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책임

- 1) 설계사 또는 그 피고용자, 대리인, 대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설계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회사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회사가 배상한 때에는 그 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설계사에게 그 손해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3) 설계사는 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개인(신용)정보 보안 서약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취급하게 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및 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 가. 본인은 회사와 회사가 위탁 받은 보험회사의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사용 및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사의 관련규정과 개인(신용)정보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나. 본인은 활동기간 동안 취급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으며 업무목적 이외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다. 본인은 개인(신용)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별도 저장, 출력, 복사, 가공하지 않을 것이며 제3자에게 위탁 및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라. 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충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반드시 폐기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마. 본인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바. 본인은 회사가 실시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 사. 본인은 퇴사 후 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으로 보관 및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7. 업무관련 서약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 가. 본인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여 위촉을 취소한 경우
- 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 1) 회사의 제반 보험영업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를 끼친 경우
 - 2) 영업관리자의 영업정책이나 권고 또는 경고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3) 보험모집질서에 반하여 행동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4) 회사의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다. 특히 아래의 정보 자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1) 회사의 전산장비는 업무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 2) 회사의 정보자산 및 고객의 정보는 업무외적인 사유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3)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전산장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겠습니다.
 - 4) 정보자산 및 자산의 외부 반출은 회사의 통제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8.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환수 동의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의 제 수당을 지급 받음에 있어 회사의 영업 제 규정에 의한 지급 및 환수기준 등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환수 발생액이 기타 수수료 발생액을 초과하는 등 수당 환수조건에 해당되어 회사가 보증보험 청구 및 기타 법적조치시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가. 회사의 선지급 수수료는 모집계약이 정상 입금되어 유지됨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실효,해약,해지,감액,취소,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합니다.
- 나. 계약의 미유지로 환수가 발생하면 회사는 수수료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하며, 미환수 잔액이 있는 경우 발생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하여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촉/해지시에는 미환수 금액 정산 후 해촉/해지 할수 있습니다.
- 다. 상기 각 호의 수수료 환수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수수료 반환 채무이행보증보험 또는 추심절차를 통해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수당반환 채무이행보증보험 처리기준 : 초회,성과 선지급수수료 및 제 수수료 반환지급 보증】

- 1. 보증보험 청구시점
 - 가. 환수 발생액이 성과수당 및 비례수당 발생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 나. 설계사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 환수 발생액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위촉 중이라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보험계약자(설계사)가 보증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증액
 - 가. 보험기간내 감액은 불가능하며, 갱신시에는 유지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동의시 감액가능
 - 나. 회사가 제 효율 및 환수액 발생상태를 감안하여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지점장		심물장	은(는) 위	촉 FP _		0	세게 당사	수수료	지급기준	및 환수	기준에	대해
		하였습니다.										
지점장	성명	:	1 5 7	(사인 또는	날인)						
		지점장 이해하였기0				엠금융서비 <u>:</u>	스 수수료	지급기	준 및 환	수기준에	대해	충분ㅎ
FP 성명	!	:			(사인 또는	= 날인)						



9.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위촉 및 위임 등)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귀중

귀사가 본인과의 설계사 위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32조, 및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위촉 및 위임계약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행위 능력자 여부 판단 신용상태에 대한 판단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판단							
수집•이용 목적	사고예방 및 채권관리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미반환 보험모집수수료 등에 대한 채권관리							
수집•이용할 항목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기타 위촉계약, 위임계약의 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수집•이용할 항목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위촉계약시 또는 위촉기간 중에 문선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거주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보유ㆍ이용 기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 에는 채무이행 완료일 끼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FP위촉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종료일,고용계약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계약 종료일 이후라도 미이행 채무(우발채무,미확정 채무 포함)가 있는 경우 에는 채무이행 완료일 까지,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종료일까지 사고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채권 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위촉 및 위임계약,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위촉 또는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에 대한 제공・조회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등),					
제공・조회	신용조회회사[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신용평가정보㈜ 등]					
대상기관	법무법인 및 법무사에 대한 제공 : 당사로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의 수임기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제공 : 당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수임 받은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에 대한 제공 및 조회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목적	법무법인 및 법무사에 대한 제공 :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위임업무의 수행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제공 : 채권추심 등 위임업무의 수행					
제고 . ㅈ칭하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제공·조회할 법무법인 및 법무사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법적절차 진행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개인(신용)정보항목	채권추심회사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채권추심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고 . 조심이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계약 종료일 이후라도 미이행					
제공・조회의	채무(우발채무, 미확정채무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이행완료일까지,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분쟁 종료일까지					
동의 효력기간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채권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조회	기사기 이어 가이 보이어 케이션 오저트로 조취하는 경에 들어하니다. (토어하 드 토어치지 아오트)					
동의 여부	│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용정보 제공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 여부						
신용정보 제공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그 동의하지 않음 그)					

10.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귀중

귀하는 아래의 귀하의 모집경력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 모집경력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모집경력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모집경력 수집.이용 목적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 여부 판단, 모집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
- 수집.이용하는 정보
- ① 성명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별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이력 등 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⑦ 수당환수 유무 ⑧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모집경력의 보유.이용 기간



① 미위촉자 : 위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② 위촉자 : 모집경력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설계사 등록말소 후 3년까지

나. 모집경력 조회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본인의 모집경력을 생명보험협회 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모집경력 조회 목적

위촉계약 체결(판매코드 부여) 여부 판단, 모집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

■ 조회할 모집경력의 내용

① 성명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별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⑤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이력 등 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⑦ 수당환수 유무 ⑧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모집경력의 보유.이용 기간

③ 미위촉자 : 위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시점까지

④ 위촉자 : 모집경력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설계사 등록말소 후 3년까지

다. 모집경력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모집경력 정보를 모집경력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 보험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mark>동의함</mark> □ 동의하지 않음□)

■ 모집경력을 제공 받는 자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의 상호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보험중개 사협회(www.ikiba.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향후 변동 될 수 있음.
-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본 동의는 귀사로부터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생명보험회 사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에,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 함.
- 모집경력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 위촉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경력의 수집.관리.제공
- ②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가 허가된 기관 : 위촉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모집경력의 체계적 관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제공
- 제공할 모집경력의 내용
- ① 성명 ② 보험업계 고유번호 ③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별 등록기간 ④ 모집한 보험계약건수 ⑤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이력 등 ⑥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⑦ 수당환수 유무 ⑧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 제공받는 자의 모집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설계사 등록말소 후 3년 까지
 - ※ 상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11. 보증보험 가입 동의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와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 미숙지 등의 사유로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 가. 회사의 규정에 의거한 수수료 반환 및 이행(지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합니다.
- 나. 계약체결 후 실적변동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가입금액 조정 요청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의 환수가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회사의 환수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12. 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약정

본인은 ㈜엠금융서비스와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촉계약서상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 가. 위촉계약유지 최저 기준
 - 1) 장기 신계약 3개월 무실적시
 - 2) 3개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시
- 나.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 미달 적용 대상자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 미달 적용대상자는 상기 1), 2)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설계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계약해지 및 이관기준

회사는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설계사 위촉계약서 제17조 2항 사)목에 따라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모집된 계약을 회사가 지정하는 모집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라. 약정의 유효기간

본 부속약정은 위촉계약서 작성일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13. 금융사고 여부 확인

본인은 아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급	금융사고	여부	(해당란에	٧	체크)
------	------	----	-------	---	-----

- 직전회사에서 금융사고 경력 유무 : 있다 □ <mark>없다</mark> □
- 직전회사에서 금융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작성

금융사고 회사명	금융사고 유형	
제재 일자	제재 내용	
[금융사고 관련내용 기술]		

주) 금융사고 경력이란 등록취소 조치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등에서 자제규정 등에 따라 금융사고자로 제재절차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금융사고건으로 보고한 경우를 말함

나. 금융사고 심의 진행여부(해당란에 V 체크)

- 직전회사에서 금융사고로 현재 심의진행 유무 : 있다 □ 없다 □
- 직전회사에서 금융사고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작성

심의진행 회사명		심의중인				
		금융사고 유형				
발생 일자						
[심의중인 관련내용 기술]					

14. 위촉계약서 교부.수령 확인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서약서,동의서,약정서 및 확인서 포함)를 잘 숙지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며 위촉계약서 1부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신청자 본인 은(는) 이상의 아래 14가지 항목

- 1. 보험모집질서 준수 서약
- 2. 완전판매 이행 서약
- 3.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서약
- 4. 윤리준법 서약
- 5. 비밀유지 서약
- 6. 개인(신용)정보 보안 서약
- 7. 업무관련 서약
- 8.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환수 동의
- 9.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 10. 모집경력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
- 11. 보증보험 가입 동의
- 12. 위촉계약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부속 약정
- 13. 금융사고 여부 확인
- 14. 위촉계약서 교부.수령 확인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으며, 이를 준수 할 것을 서약,동의,약정 및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사】

소 속 : 서울사업부 지점

성 명: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

<mark>주 소</mark>: 연락 처:

【관리자 확인】

상기 14개 항목에 대해 관리자 본인이 상기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하에 설계사가 자필서명 날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소 속 : <u>서울사업부</u> ₋ 대구 지점

성 명: 직책 지점장 출분히 설명 하였습니다. 실 불 감 (일/성명)

주민등록번호 : 6108/5 - 1696424

주 소: 경인지 하양을 대학을 298일 20-9

연락처: 이0-25이-6411

㈜엠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귀중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엠금융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FP등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부당 행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된 자를 말한다.
- 2.'부당행위'라 함은 모집종사자가 모집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금융감독원의 관련규정 및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의 협정, 회사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징계조치'라 함은 부당행위를 한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회사가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징계행위 등을 말하며, 징계행위 등의 구체적인 유형 및 정의는 제 4조의 3과 같다.
- 4.'수수료'라 함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및 물적의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로부터 모집에 대한 위탁 또는 산하조직의 운영 및 제반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은 아래 각호의 모집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1.회사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위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2.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모집 등의 영업행위 또는 이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 회사에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자

제 4조 (조치의 종류)

- 1.징계조치의 종류는 부당행위의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영업정지','수수료 삭감','해촉'등으로 구분하며 제 3조에 서 규정한 적용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가 의심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부당행위는 확인 되었으나 영업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조치가 확정되기까지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직무 일시정지' 및 '수수료 지급 일시정지'의 일시적인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위에 대한 민,형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의2 (조치의 원칙)

- 1.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는 아래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가.부당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게 집행한다.
- 나.징계조치가 해당 모집종사자에 미치는 영향보다 장기적으로 회사 및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 다.징계조치 집행에 있어 규정 예외적용을 최소화해 일관성 있는 영업인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위원회는 부당행위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제4조 1항의 징계조치 종류 범위 내에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조치의 양정은 '별표 1.(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기준)'을 따르되, 동종 혹은 다른 종류의 부당행위가다수 발생한 경우, 이를 병과 및 가중하여 징계조치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의 범위, 건수, 정도 등에 따



라 징계조치 종류를 달리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3.하나의 부당행위가 여러 종류의 부당행위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징계조치를 적용한다.
- 4.이 규정 제4조 2항의 일시적인 사전 조치는 모집종사자의 부당 행위가 의심되어 원활한 사실 확인 조사 또는 회사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사 관리부서장의 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사전조치는 그 후 사실 확인조사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결의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해제 결의 또는 위원장의 해제결정이 없는 경우 조치 시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 5.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가까운 장래에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손해액 상당의 제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부지급 할 수 있다.
- 가.보험료 및 보험금 등의 횡령, 유용 등 금전과 관련된 부당행위
- 나.고객, 회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
- 6.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치와는 별도로 모집종사자 등에 대하여 관련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의3 (각 조치별 적용 대상 및 정의)

- 1.'주의'및 '경고'는 모집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공식적인 통지를 통해 부당행위에 대한 모집종사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 2.'영업정지'는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험 모집행위를 금지 함을 의미한다.
- 3.'수수료 삭감'은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기간 동안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여 지급함을 의미한다.
- 4.'해촉'은 모집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와의 위촉(위탁)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고, 보험사별 코드삭제를 의미한다.
- 5.'직무 일시정지'는 모집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기간 동안 회사와 계약 맺은 해당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함을 의미하고, 본사 및 해당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다.
- 6.'수수료 지급 일시정지'는 모집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제 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함을 의미한다.

제 5조 (영업인사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 1.회사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사항 및 위촉 금지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영업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2.위원회 운영 주관부서는 본사 관리부서로 한다.
- 3.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대표이사 추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 4.위원회의 간사는 본사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 5.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조 3항의 위원 이외의 관련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 6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부당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조치 결정권과 위촉 금지 대상자의 심의 결정권을 갖는다.

제 7조 (부당행위 징계조치 결정 심의절차)

1.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 4조 제2항의 사전조치는 제 4조의2 제 4항에 따른다.



- 2.회사의 임직원은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영업인사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요청서를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방법은 관련된 자와의 전화통화, 서면접수, 면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단, 고객과의 통화 또는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4.위원회의 간사는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면 사실확인 내용을 위원에게 사전 통보 한다.
- 5.사전 통보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상정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6.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근거로 한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징계조치사항을 결정하여 한다.
- 7.정기적인 위원회는 매월 사업부 대표 회의 또는 이사회 회의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인 위원회는 위원회의 간사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조 (부당행위 징계조치결정 심의 의결)

- 1.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전체위원(위원장은 제외)의 3분의2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징계조치 예정자 중 모집종사자의 소명이 심의과정에서 거짓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포인트를 2배가산하여 적용한다.

제 9조 (위촉금지 대상자의 심의절차 및 심의의결)

- 1.위촉금지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단, 이 규정에 따라 해촉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바로 위촉이 금지된다.
- 2.회사의 임직원은 위촉금지 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위촉금지 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위원회의 심의의결은 3분의2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0조 (위촉금지 심의대상)

모집종사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금지 대상자로 심의할 수 있다.

- 1.금융위원회에 의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자.
- 2.악의적 또는 고의적 민원발생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3.보험금 지급관련 부당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4.기타 부당행위의 사유로 관련부서에서 위촉금지 심의대상자로 요청한 자.

제 11조 (위원회의 의결 집행)

- 1.위원회의 간사는 의결된 징계조치사항 및 위촉금지 대상자를 기록하여 위원회 위원 전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의결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 2.위원회의 징계조치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해당 사업부에 집행사실을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집행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조치 의결사항의 집행시점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개최월 이월 1일부터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즉시 적용할 수 있다.단, 해촉의 경우에는 설계사 위촉계약서의 해지관련 규정과 본 조항의 내용이 다른 경우 설계사 위촉계약서의 해지절차를 따르되, 위원회 의결로 해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 당일 서면으로 해당 모집 종사자 등에게 위원회 의결에 따른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 4.예외적으로 영업정지 연기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 사업부에서 요청하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집행시점의 연기를 결정 할 수 있다.
- 5.위원회에서 결정된 해촉 또는 위촉금지 대상자는 향후 2년 동안 위촉을 금지하며, 집행시점은 원칙적으로 위원 회 개최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기간연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6.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의 집행이 정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야 한다.

제 12조 (부당행위 징계조치결정 재심의 절차)

- 1.징계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원심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2.재심의 요청은 징계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재심의 요청시 위원회 간사는 심의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심의 가능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한다.
- 4.재심의는 관련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5.재심의의 의결은 이 규정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13조 (위촉금지 재심의 절차)

- 1.위촉금지 처분을 받은 자가 위촉금지 기간 중에 위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위촉금지 재심의 요청시 위원회 간사는 심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심의 가능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 를 요청한다.
- 3.재심의는 관련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재심의의 의결은 이 규정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 5.재심의 결과 위촉가능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즉시 위촉금지를 해제한다.

제 14조 (관련자료의 보존)

- 1.경영지원본부는 징계조치 관련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는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한다.
- 2.위촉금지 대상자의 명단은 영구 보존한다.
- 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의 개인정보는 모집종사자가 작성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있을 경우 그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보유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제 15조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 기준)

모집종사자의 부당행위 조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 16조 (모집종사자 징계포인트 합산)

모집종사자의 징계포인트 합산은 [별표 2]에 의한다.



별표 1

모집종사자 부당행위 조치 기준

부당행위 유형		영업정지		경고	주의
Τοοπ πο	해촉	2월	1월	о т	十一
1.보험료 및 보험금 등의 횡령 또는 유용	0				
2.직접수령이 금지 되어 있는 보험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0		
3.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보험 이외의 상품을 부당하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금 또는 저축액등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행위	0				
4.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가.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0			
나.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0			
다.모집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허위 또는 부실 고지			0		
라.설계사 보고서 임의, 허위 기재			0		
마.청약서,건강진단서 등의 임의작성 또는 변조	0				
바.청약일자 또는 즉시이체정보 제공 시간 임의, 허위 기재			0		
5.자필 미서명					
가.작성계약	0				
나.청약서 및 청약관련 제반서류			0		
다.펀드변경 등 제반 변경신청서			0		
6.부당안내자료 제작 또는 사용					
가.단순 미승인 자료			0		
나.수익율 관련 미승인 자료		0			
7.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또는 제공약속 등					
가.금품제공			0		



부당행위 유형	해촉	영업	영업정지		주의
тобп тб	엨	2월	1월	경고	十当
나.보험료 대납.할인			0		
다.조건부 계약(대출알선 대가 등)			0		
8.보험계약 경유 처리	0				
9.보험계약 체결 위반					
가.승환계약					
1) 1~5건				0	
2) 6~10건			0		
3) 10건 초과		0			
나.대리진단 계약	0				
다.변칙판매			0		
(일수판매,월 할부판매,부적격 단체 가입 등)					
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불면접 판매			0		
마.성명 및 생년월일 임의작성 또는 변조	0				
바.해외에서의 보험 영업행위			0		
사.상품안내 불성실(계약내용 설명미흡)					
1) 갱신형 보험상품					0
2) 기타					0
아.상품안내 불성실(계약내용설명미흡)로 인한 품질보증 해지					
1) 갱신형 보험상품				0	
2) 기타				0	
자.약관,청약서,보험증권 미전달 또는 지연전달					0
차.약관,청약서 미전달로 인한 품질보증 해지				0	
10.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특정 수익율 보장 또는 초과수익율 예시설명			0		
나.특정 수익율 보장 또는 초과수익율 자료 제공		0			
다.단기투자상품으로 설명			0		



부당행위 유형	해촉	영업	정지	경고	주의
ΤΟΘΉ ΠΘ	에크	2월	1월	<u>от</u>	十二
라.원금손실 가능성 및 제 수수료 설명 미이행			0		
마.원금손실 가능성 및 제 수수료 설명 미흡				0	
바.무자격자 변액상품 판매 (교육 미이수자 변액 상품판매 포함)	0				
11.부적절한 회사로고 사용 승인되지 않는 명함 또는 회사로고 임의사용				0	
12.개인정보(이하 신용정보 포함) 유출, 오남용 및 부실 관리					
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등 고의로 유출하는 행위	0				
나.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0		
다.외부로 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해 오는 행위			0		
라.청약서 사본, 고객의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0		
마.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위조			0		
바.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				0	
13.기타					
가.자금세탁 행위를 도와주거나 방조한 행위 및 본인의 직접적인 자금세탁 행위	0				
나.뇌물수수	0				
다.보험사기에 개입하였거나 조장한 행위	0				
라.고객으로 가장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발신전화 대리수신,자동이체 임의변경 등)			0		
마.민원업무처리의 부적정(처리지연,대외비화 등)			0		
바.법규준수 관련 보수교육 미이수					0
사.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0				

1.상기 조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사회질서 문란행위나 모집질서 문란행위 또는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결정 할 수 있다.



별표 2

모집종사자 징계포인트 합산

구 분	징계조치 종류	징계포인트	유효기간
징계포인트 누적시 조치	해 촉	9점	-
부당행위 1회당 징계포인트	영업정지(2개월 이상)	5점	1년
	영업정지(1개월)	3점	1년
	경 고	2점	6개월
	주 의	1점	6개월